

Dream Factory.. 開城

Gaeseong Industrial Complex Guide

# 개성 공단 길라잡이





# CONTENTS

## 1. 개성공단 사업은

개관

04

## 2. 1단계 사업 어디까지 왔나

추진현황

06

## 3. 개성공단 기업환경은 어떠한가

입지 · 기반시설

08

## 4.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어떻게

투자절차와 방법

12

## 5. 개성으로 가는 길, 개성에서 오는 길

인원 · 물자 왕래

20

## 6. 개성현지 기업 활동은 어떻게

개성현지 기업운영

26

## 7.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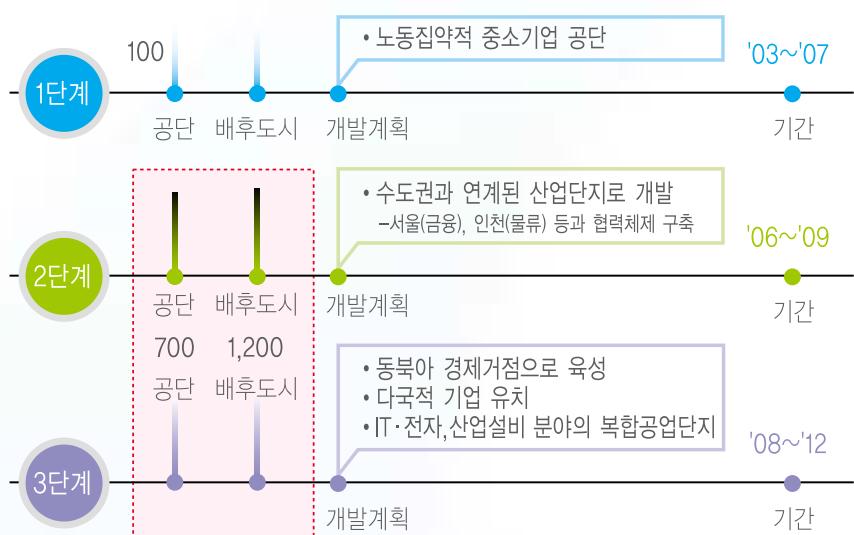
기업활동 지원

34

# 1. 개성공단 사업은

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,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는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입니다.

총 2,000만평(공단 800만평, 배후도시 1,200만평)을 3단계에 걸쳐 개발



개성공단사업 단계별 경제적 효과(현대경제연구원 분석, 2005. 1)

(단위 : US\$)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누계
남한	58억	130억	656억	844억
북한	13억	33억	103억	149억

▷ 개성공단 완공 후 매년 남한은 198억US\$, 북한은 14억US\$의 경제효과 예상

- 남한의 경제효과
  - 인건비 절감, 원부자재 판매, 생산유발,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
- 북한의 경제효과
  - 직접외화 획득, 공단 내 인프라 조성, 공장건축 효과 등

우선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이  
200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위 치 : 개성시 봉동리 일원 100만평

(개성↔평양 160km, 개성↔서울 60km, 북방한계선 1.5km)

사 업 기 간 : 2003년 ~ 2007년(2003. 6. 30 착공)

건 설 비 용 : 2,205억원(토공자금 1,110억원, 국고지원 1,095억원)

사 업 시 행 : 한국토지공사/자금 · 설계 · 분양, 현대아산(주)/시공

사 업 상 대 : 북측 아태 · 민경련

### 사업추진경과

'00. 8. 22 현대-北아태간 개발합의서 체결

'02. 11. 27 北, 개성공업지구법 발표

'02. 12. 1 北,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증(50년) 발급

'03. 6. 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거행

'04. 4. 13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(토공, 현대 ↔ 北중앙특구총국)

'04. 4. 23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(통일부)

'04. 6. 14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

'04. 6. 30 시범단지 부지 조성공사 완료

'04. 9. 14 시범단지 건축공사 착공

'04. 10. 5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

'04. 10. 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

'04. 12. 15 공장가동 및 제품생산 시작

## 2. 1단계 사업 어디까지 왔나

Pilot project로 추진되고 있는 시범단지 2만 8천평에는  
금년 중 15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, 본격 가동됩니다.

2005년 7월 말 현재 4개 기업 가동, 9개 기업 공장건축 중, 시범단지 구조물 공사  
(상하수도, 도로포장 등) 98.9% 진행

- 2004. 12. 15 개성공단 리빙아트 공장준공 및 첫제품 생산 기념식 개최
- 2005. 3. 16 개성공단내 남측전력 공급 개시
- 2005. 3/4분기 남측 – 개성공단간 직통전화 및 FAX 개통 예정

2005년 7월 말 현재, 북측근로자 4,000여명(건설인력 포함), 남측근로자 500여명 근무

- 시범단지 완전 가동시 약 4,000여명, 1단계 본격 가동시 약 7만여명의  
북측 근로자가 입주 기업에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



## 1단계 본단지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.

### 부지조성 공사

- 2005년 7월 말 현재 78.3% 공정, 2006년 완료목표로 추진

### 기반시설 공사

- 용수 · 폐기물처리시설 등 현재 설계 단계, 금년 하반기 중 공사착수 예정, 2006년 말 완료목표로 추진

▷ 폐수처리장 착공(2005. 4. 29)

### 본단지 분양계획

- 금년 8월부터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기반시설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양을 실시



### 3. 개성공단 기업환경은 어떠한가

개성공단은 우수한 입지, 양질의 노동력, 세제 혜택 등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

#### 입지여건

서울에서 60km, 인천에서 50km에 위치, 거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배후지로 활용, 물류비 절감 가능

- ▶ 경의선 도로 · 철도 연결을 통해 인천공항, 인천항 활용 가능

평양에서 160km에 위치,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

- ▶ 남북당국간 합의(2004. 6. 5)에 따라 「남북경협협의사무소」 설치 예정

향후 TCR(중국횡단철도), TSR(시베리아횡단철도)과 연결,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역할 전망



## 운영여건

경쟁력 있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, 저렴한 분양가

- ▶ 최저임금 月 57.5US\$ (사회보험료 7.5US\$ 포함 : 임금의 15%)
- ▶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양호하고, 언어 및 문화장벽이 낮은 것도 이점
- ▶ 평당 149,000원에 분양(북측과의 토지임대차 계약체결일 (2004. 4. 13)로부터 50년간 사용)

매력적인 세제 혜택

- ▶ 법인세의 경우, 10~14% (국내 13~25%, 중국 15%, 베트남 10~15%)이며, 다양한 감면 혜택
- ▶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측에 세금을 낸 경우, 남측에서는 면제

남북 당국의 강력한 개발 의지

- ▶ 법 · 제도 마련, 투자자금 지원 등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



## 기반시설

### 도로 · 철도

- 도로(4차선, 통일대교 북단 - 개성간 12.1km), 2004. 11. 30 완공
- 철도(단선, 문산 - 개성간 27.3km), 2005. 12월 말 완공 예정
  - ▶ 인천공항 · 인천항 활용, 동경, 홍콩, 상해 등 주요도시에 빠른 시간 내 접근 용이

### 전력 · 통신

- 전력(한국전력) : 시범단지(1.5만kW)는 배전, 본단지(10만kW)는 송전방식 공급
  - ▶ 2005. 3. 16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, 본단지는 2006년 말 공급 예정
  - ▶ 국내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 기업에 공급
- 통신(KT) : 시범단지 100회선, 본단지 10,000회선 연결
  - ▶ 시범단지는 2005. 3/4분기 개통 예정, 본단지는 2006년 말 목표로 북측과 협의 진행
  - ▶ 문산 - 개성전화국 - 개성공단을 연결하며, 통신요금은 분당 40센트 수준

### 용수, 오 · 폐수 및 폐기물 처리

- 용수 : 개성공단 1단계 지역 인근에 정 · 배수장(6만톤/일) 건설, 공급
  - ▶ 월고저수지(개성공단 북측 약15km)를 취수원으로 이용
  - ▶ 시범단지는 지하수(관정 개발) 사용
- 폐수 및 폐기물 처리 : 폐수종말처리장(3만톤/일, 8천평) 및 폐기물처리장(155톤/일, 1.5만평) 설치
  - ▶ 시범단지 내 폐수는 임시폐수처리장 설치 · 처리, 폐기물은 북측에 위탁처리
  - ▶ 본단지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은 1단계 지역 내 설치 예정

기타 기반시설 관련 문의사항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과  
Tel 02) 3703-7454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그러나, 전략물자 반출, 해외 판로 확보 등  
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도 있습니다.

원자재, 공장설비 등 개성공단에 보낼 특정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 
대외무역법,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반출을 통제

- ▶ 미국산 기술 · 소프트웨어가 10% 이상 포함된 경우, 美 상무부 사전 승인 필요

주요시장인 미국, 일본, EU는 북한산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 
부과하므로 판로 확보를 위한 업체별 자체 대책 마련 필요

- ▶ 단기적으로 내수용 판매, 반제품의 국내 반입, 동남아 등 무역장벽이 낮은 곳으로  
수출 방안 등 마련 필요
- ▶ 국제관계에 따르면,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대부분 '북한산'으로 판정될 가능성

## 4.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어떻게

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먼저 전략물자와 원산지 문제에 따른 판로 확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.

### 전략물자/수출통제품목 해당여부 검토

대량살상무기(WMD)의 제조·개발 등에 전용 가능한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며, 개성공단 반출을 위해서는 심사·판정 및 승인 절차가 필요

- 「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」 「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」 ([www.sec.go.kr](http://www.sec.go.kr)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, 로그인 후 판정/허가지원 → 판정지원 → 자가판정지원 선택, 「전략물자 판정/허가 시스템」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
- 자가판정의 방법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여부를 직접 의뢰하여 판정받아야 함. (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접속 후 사전판정지원 참조)

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Tel 02) 6000-5252~3

미국수출관리규정(EAR)에 따라 미국산 기술·소프트웨어가 10% 이상 포함된 제품을 개성공단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

- 한·미간 별도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절차에 대해 통일부에 문의  
    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Tel 02) 3703-7442 (전략물자 전반)  
    지원종괄과 Tel 02) 3703-7416 (미 EAR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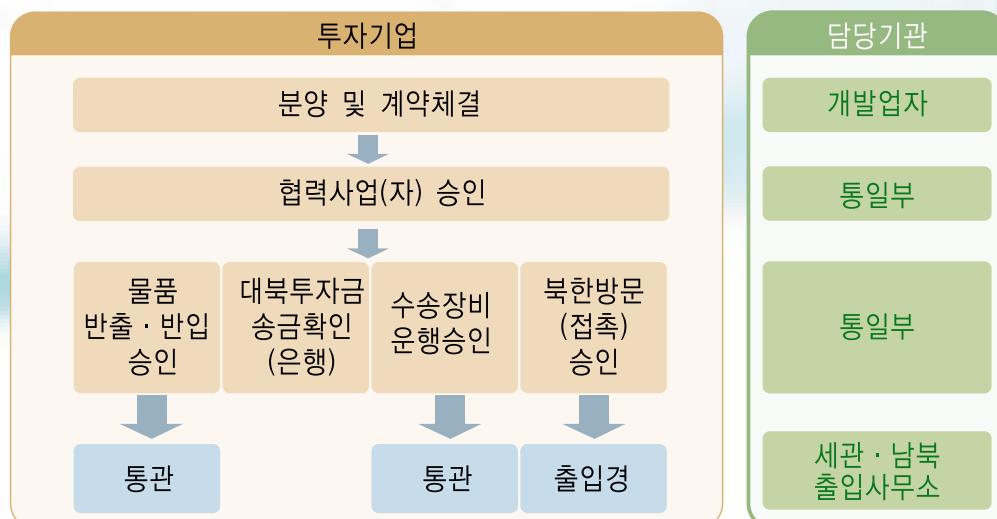
## 원산지 및 판로 확보 문제

개성공단 수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제관례상 ‘북한산’으로 판정, 주요 국가로부터 관세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

- 미국의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수출이 어렵다는 점과
- 일본, EU의 경우 북한산 수출 품목에 따라서는 다소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,
-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내수용 판매, 개성공단 수출품에 대한 관세상 불이익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
  - ▷ 한-싱가폴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시 남측으로 반입되어 싱가폴로 수출되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결정
  - ▷ 한-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시에도 역외가공방식을 활용한 개성공단 생산제품(국내 원부자재 60% 이상 이용)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결정

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Tel 02) 3703-7442

개발사업자로부터 분양을 받고, 통일부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협력사업(자) 승인을 받은 후, 현지 투자, 방문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.



## 분 양

본단지 분양대상 : 공장용지 62.8만평, 지원시설용지 5.8만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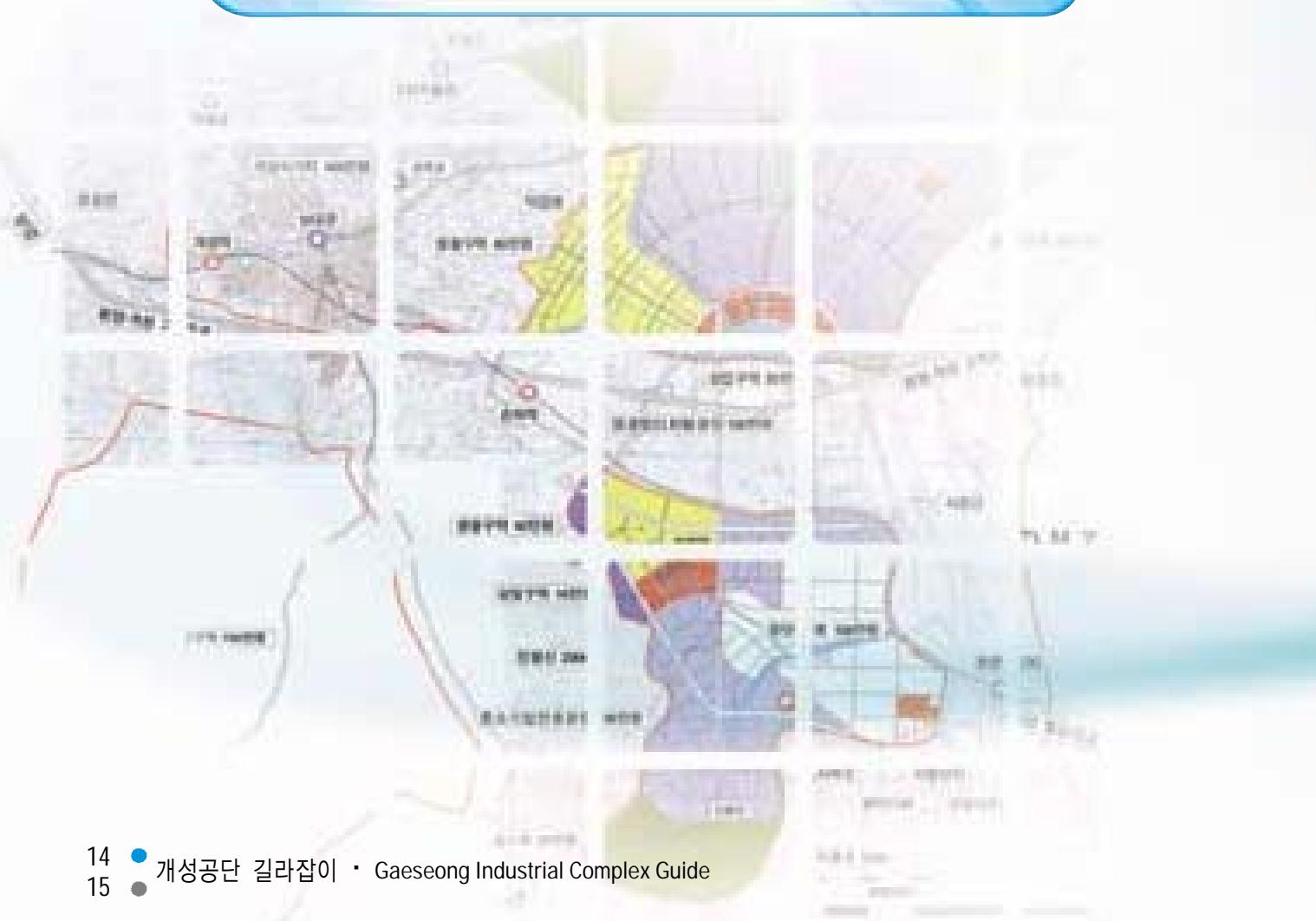
- ▶ 1단계 100만평 중 공공시설용지 24.3만평, 시범단지 2.8만평, 유보지 4.3만평을 제외한 면적

분양기관 : 한국토지공사

분양일정 : 금년도 8월,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잔여부지를 단계적으로 분양

- ▶ 시범단지의 경우, 2004년 5~6월 분양(분양가 : 149,000원/평)을 실시하였으며, 총 136개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15개 업체 선정

- 기타 분양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분양팀  
Tel 031) 738-7479, 7565, 7419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구체적인 분양시기 및 대상,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공고하는 분양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.



## 협력사업(자) 승인

협력사업(자) 승인신청서 및 분양확인서,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남북교류 협력시스템 (<http://inter-korea.unikorea.go.kr>)을 통해 신청

- ▶ 사업계획서에는 투자계획, 자금조달 운용계획, 생산·판매계획, 조직·인력계획, 반출물자, 추진일정 등을 포함

신청 후 15일 이내에 관계부처 협의,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여부 결정

- ▶ 승인담당기관 :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 Tel 02) 3703-7413

- 분양계약 체결후,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사업(자) 승인을 받으면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비됩니다.
-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「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」를 제정, 제출서류, 처리기한 등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.
-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경우, 전략물자 심사 및 美 상무부의 수출통제품목 심사 절차를 거침에 따라 기업별로 협력사업 승인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이루어 진 바 있습니다.

## 대북투자 신고

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「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」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(외국환거래 취급 은행)장에게 신고

- ▶ 대북투자신고서, 협력사업 승인서,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

개성 현지에 현금을 송금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.

## 물품 반출입 승인

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 : 「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·반입절차에 관한 고시」에 규정

- ▷ 컴퓨터, 전략물자 해당품목, 반입도서·미술품 등

방법 : 남북교류협력시스템 (<http://inter-korea.unikorea.go.kr>)에 승인 신청

- ▷ 승인담당기관 :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Tel 02) 3703-7443

승인 후 통관절차

- 물자 반출입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세관에 수출입신고필증 (Packing List, Invoice 포함)  
제출 후 검사 및 통관
- ▷ 수출입신고필증 : 관세사 대행을 통해 서울세관에서 발급

- 승인을 요하는 품목 이외에 개성에 오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통관시 수출입신고필증의 세관 제출 → 검사를 거쳐 반출입이 이루어집니다.
- 정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, 협력사업 승인 범위 내에서의 반출·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일부장관의 신고없이 반출·반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「협력사업용물품의 반출입 신고 제도」를 2005년 3월 23일 부로 폐지하였습니다.



## 남북한 반출입 금지 품목

- 남측 : 「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」(통일부고시 제99-1호)에 따라 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규정

### ◎ 반입 금지 물품

-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 ·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 · 간행물 · 영화 · 음반 ·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
- 화폐 · 수표 · 어음 ·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· 모조품
- 종포 · 도검 및 화약류 등
- 마약 ·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
-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
- 「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·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」에 의한 규제 물품 및 이를 성분으로 한 의약품
- 호골, 웅담, 사향, 해구신 등

### ◎ 반출 금지 물품

-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
-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(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)
-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

### ◎ 반출 · 반입 제한물품

「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·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 ·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

- 식품류(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)
- 검역대상 물품
- 전략물자 ·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에 의한 수출 규제 품목
-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

- 북측 : 「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」(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)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반출입 금지 품목 지정

#### ◎ 반입 금지 물품

- 무기, 총탄, 폭발물(공업지구 공사용은 제외), 군수용품, 흉기
  - 쌍안경 · 망원경(배율 10배 이상), 사진기(160mm 이상의 고정 렌즈)
  - 무전기와 그 부속품
  - 독약, 극약, 마약 및 방사성물질, 유독성화학물질
  -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 또는 그 원고, 필름, 사진, 녹음녹화테이프, 소리판, CD, 미술작품, 수공예품, 조각품
  -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들여오는 정해진 물품
  - 반입금지 합의 물품
- ▷ 핸드폰, 차량GPS장비, 무선기기, 저장장치, 캠코더 등 금지

#### ◎ 반출 금지 물품

- 무기, 총탄, 폭발물, 군수용품, 흉기
- 무전기와 그 부속품
- 독약, 극약, 마약 및 방사성물질, 유독성화학물질
- 역사유물
- 기밀에 속하는 문건, 출판인쇄물(사본한 것 포함)과 그 원고, 필름, 사진, 녹음녹화테이프, 소리판, CD
- 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

## 공장설계 및 건설업체 선정

각 기업별로 시범단지 사례, 북측과의 협조 측면, 설계 및 건축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설업체를 선정

- 시범단지 공장의 경우 평균 공사비는 평당 220만원(설계비 별도)으로 국내 건축비용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.
  - 건축기간도 국내보다 20~30% 더 소요되었습니다.

## 5. 개성으로 가는 길, 개성에서 오는 길

개성공단 방문을 위해서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및 차량운행 승인 등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.

방북에 필요한 서류 구비

- 초청장(출입증) :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신청
  - ▷ 초청장은 향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전환될 예정
  - ▷ 초청장(출입증) 신청기관 :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 Tel 02) 732-9722
- 방북증명서 : 초청장 발급 후 방문 예정 5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(<http://inter-korea.unikorea.go.kr>)에 발급신청서 및 신원진술서를 입력 · 신청
  - ▷ 방북증은 단수와 수시 2종이 있으며, 수시방북증은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통일부가 승인한 방북기간 내 방북 신고 후 재사용 가능
  - ▷ 방북증명서 발급기관 :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 Tel 02) 3703-7413
  - ▷ 개성공단사업지원단,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18층에 위치(오시는 길 : [www.kidmac.com](http://www.kidmac.com) 참조)

- 구체적인 방북일자가 정해지면, 방북 3일 전 ① 출입계획서 ② 「개성공업지구 출입인원 및 차량현황(북 출입국사업부 통보용)」을 작성합니다.
  - 출입계획서 : 남북교류협력시스템 (<http://inter-korea.unikorea.go.kr>)에 입력
  - 「개성공업지구 출입인원 및 차량현황」 : 소정 양식에 작성, 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 ([kaesongseoul@naver.com](mailto:kaesongseoul@naver.com))에 이메일 송부
- 최초 방북시에는 방북 안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- 교육 신청 및 교육 일자 안내 :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Tel 02) 3703-7413, 7433
  - 교육 장소 : 통일부 통일교육원(강북구 수유동 소재)
- 개성공단 상주인원을 위해서 특별 방북 안내교육이 개설되어 있습니다. (매월 15일)
- 수시방북증명서 소지자 북한방문신고는 출입계획서 제출로 갈음합니다.

## 물자와 인원수송을 위한 차량운행 준비

- 수송장비운행승인서 : 차량운행 5일 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(<http://inter-korea.unikorea.go.kr>)에 수송장비운행 승인 신청
  - ▶ 첨부서류 : 차량등록증, 운행계획서 등
  - ▶ 발급기관 :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역과 Tel 02) 3703-2363~4
- 통행차량증명서 :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입력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됨.
  - ▶ 신청 · 발급기관 : 관세청(서울세관) Tel 02) 3438-1142
  - ▶ 개성공단 출입시 남북출입사무소 내 세관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차량출입을 위한 출입경 심사인을 날인 받아야 함.

- 승인신청 처리기간 기존 30일 → 5일로 단축, 운행승인 유효기간 부정기 1년, 정기 2년으로 확대(2005. 6. 13), 통행차량증명서 인터넷 발급(2005. 7. 4 시행) 등 수송장비운행 승인 절차가 개선됐습니다.

## 기타 준비사항

- 개성 현지에서는 달러화만 통용, 개성공단 내 국내은행 지점에서 환전 가능
  - ▶ 미리 환전하여 달러화를 소지하고 개성을 방문하는 것도 무방
- 개성 현지에서 숙박이 필요한 경우, 출입계획서 제출 이전에 미리 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연락, 숙박 가능 여부를 확인
- 개인 세면도구 등은 가급적 자참, 공단내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품은 구입 가능

※ 외국인은 방북 증명서 없이 북측의 초청장만으로 개성방문이 가능합니다. (여권으로 출입심사)

-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북측 초청장 발급 신청
-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, 방북 3일 전까지 출입계획서 및 「개성공업지구 출입 인원 및 차량 현황」을 작성, 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통보

## 개성공단에 갈 때에는

방북증명서 등을 필히 소지하고, 남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출입·세관·검역 심사를 거쳐 지정차량에 탑승하시면 됩니다.

개성공단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

- 운행 : 1일 왕복 1회, 주 6일(월~토요일)
- 현대 계동사옥(비원주차장)에서 07:40 출발(요금 편도 8,000원)
  - ▶ 셔틀버스 이용 문의 : 현대아산(주) 출입팀 Tel 02) 3669-3676

사전에 승인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
- 방북 당일 출입계획서상 MDL 통과 1시간 전까지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

- 통일대교 앞에서 우리 군당국의 간단한 인원확인을 거친 후,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하차, 수속을 받게 됩니다.
  - 출입심사·세관심사를 위해 출입신고서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
  - 검역(필요시 검역증을 제출) → 세관검사(반출입의 경우 출발보고서, 차량운행자는 통행차량증명서 제출) → 출입심사(출입신고서 제출)
- 남북관리구역(DMZ 중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남북연결통로)을 지날 때 우리 군당국과 북측 군부의 호송을 받아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합니다.
- 남측 통일대교 통과 후 이동 중에는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금지됩니다.

### 북측 출입사무소 출입심사 및 세관심사시 유의사항

- 핸드폰, 차량 GPS 장비, 각종 CD, 테이프 등 무선기기 및 저장장치, 북측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건·책자, 쌍안경·망원경(10배 이상), 카메라(160mm 이상 부착), 캠코더 소지 불허
- 북측 세관원의 질문에 정중히 답변하고, 북측 세관원이 물품이나 가방을 열어 볼수 있다는 점에 유의

- 북측의 초청장 없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출입증으로 개성 방문이 가능해지면, 7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은 개성공단 도착 48시간 내에 북측 출입사업기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.



## 귀환시에도

개성공단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증명서를 필히 소지하고,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, 출입·세관·검역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
개성공단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

- 운행 : 1일 왕복 1회, 주 6일(월~토요일)
- 현대아산(주) 개성사무소에서 15:40, 관리위원회에서 15:50 경 출발  
▷ 사전에 필히 탑승시간과 장소를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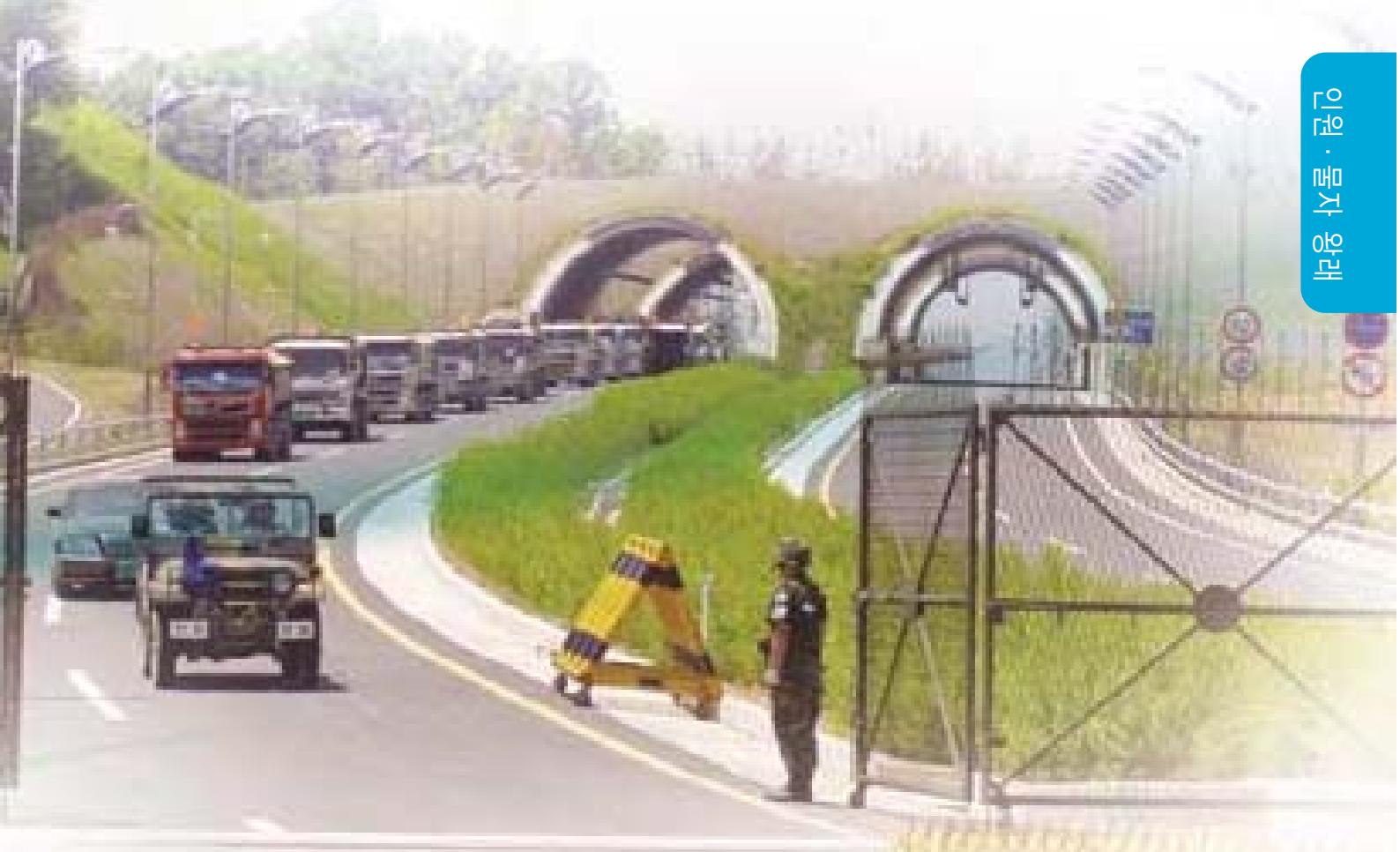
사전에 승인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
- 방북 당일 출입계획서상 MDL 통과 1시간 전에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

- 개성공단에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, 개성공단 내 북측 세관에 반출입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.
- 외화는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으나, 귀금속과 보석은 신고해야 합니다.  
※ 북측 출입사무소에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리랑매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 
우리측 세관에서 1인당 주류 1병으로 제한하고, 일부 반입을 불허하는 품목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우리측 출입사무소 도착, 세관신고시 유의사항

- 북한방문증명서(단수)는 귀환시 반납하고, 수시 북한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반납
-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.
  - ▶ 북측의 원산증명서 없이도 반입자의 원산지신고에 대해 세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확인을 갈음(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)



## 6. 개성현지 기업 활동은 어떻게

개성현지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 승인신청, 승인 후 기업등록, 세관·세무등록을 하시면 됩니다.

- 「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」는 개성공단 관리를 위해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(제24조) 및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설립된 북측기관으로서, 남측의 인력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.
  - 개성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, 각종 인·허가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### 기업창설 및 등록

#### 기업창설 승인신청

-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
  - ▷ 첨부서류 : 기업창설신청서,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, 기업규약 등
- 관리위원회에서는 10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

#### 기업등록

- 입주기업은 등록자본(총투자액의 10% 이상) 또는 그 이상 액수를 투자한 후 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 신청
  - ▷ 첨부서류 : 기업등록신청서, 기업창설승인서 사본, 토지이용권등록증 사본, 투자실적확인 문건
- 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업등록증 발급

#### 세관 및 세무등록

- 기업등록 후 20일 이내에 공업지구세관에 세관등록, 공업지구세무소에 세무등록
  - ▷ 현재, 세무등록은 북측 공업지구세무소 본격 운영시까지 관리위원회가 대행



개성공단 내 기업경영 활동은 북측이 제정한  
「개성공업지구법」과 「노동규정」, 「세금규정」 등  
하위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## 부동산 · 건축

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 
첨부하여 토지이용권 등록신청서를 제출

- 관리위원회가 신청기업에게 토지이용권 등록증을 발급

▶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날부터 토지이용권 취득

공장 건축은 관리위원회에 건축허가신청서와 착공신고서를 작성 · 신청하고,  
관리위원회가 건축허가, 착공허가를 통보

- 전기 · 소방 · 가스설비 등에 대한 준공전 검사, 준공검사, 준공공사 승인서 발급,  
건축대장 등재, 공장등록 등의 순서로 진행
- ▶ 시범단지의 경우, 건폐율 50%, 용적률 100%, 4층 이하, 대지면적의 15% 이상의 조경,  
주차장 설치 등을 공장건설 기준으로 적용

신축 건물에 대해 관리위원회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증과 토지이용권  
등록증을 첨부하여 건물소유권 등록신청서를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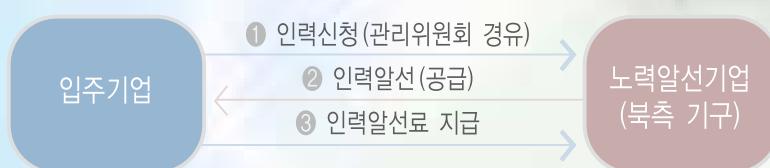
- 관리위원회가 신청기업에게 건물 소유등록증을 발급

▶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검사 합격일, 분양 · 양도 건물은 관리위원회 등록일부터 건물  
소유권 취득

- 토지 및 건물 이용기간 내 토지이용권, 건물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,  
임대, 저당이 가능합니다.
  - 관리위원회에 등록수수료 납부, 양도 · 임대 · 저당 등록
- 부동산 소유자 사망시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.
  - 관리위원회에 상속등록을 하면, 상속부동산에 대한 양도, 임대, 저당 가능
-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 
납부해야 합니다.
  - 토지사용료는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

## 노무관리

### 인력 채용 및 해고



- 각 기업별로 직무별 필요인원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위원회를 경유, 북측 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함으로써 입주기업과 북측 노력알선기관간 협의를 진행
  - 입주기업과 노력알선기관간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공급 받은 후, 입주기업과 북측 종업원간 노력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용
  - 해고시에는 당사자에게 30일 전까지 사유를 통보하고 해고종업원 명단 및 해고사유를 노력알선기업에 제출
- ▷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해고 조건, 해고할 수 없는 조건 등 규정

- 노력알선에 대하여 채용 1인당 17US\$의 노력알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- 필요시 남측 및 해외동포,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임금

- 월 지급 최저임금 : 57.5 US\$ (임금의 15%인 사회보험료 7.5 US\$ 포함)
  - 인건비 상승률 : 연 5% 미만
  - 지급방식 :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, 현재 북측과 직접 지급의 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중
  - 노동시간 : 주 6일제 48시간
    - ▷ 연장 및 야간근무 : 기준급여의 50% 추가 지급, 공휴일 근무 : 기준급여의 100% 추가 지급
    - 휴가
      - ▷ 정기휴가 年 14일, 보충휴가 2~7일 (유해업무 종사자)
      - ▷ 출산 휴가 : 150일 (유급 60일)
- 노동보호 : 기업은 산업위생조건 보장 및 노동안전시설 구비 의무

## 세 금

개성공업지구의 세금은 기업소득세, 개인소득세, 재산세, 상속세, 거래세, 영업세, 지방세 등으로 분류

### 세율 및 감면제도

구분	납세의무자	과세기준	세율	감면제도
기업 소득세	개성공단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	결산이윤	14% (일반업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려 · 생산 부문 투자 :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 면제, 이후 3년 50% 감면</li> <li>서비스부문 투자 :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년도부터 2년, 이후 1년 50% 감면</li> <li>이윤 재투자 : 3년 이상 운영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%를 다음년도 세금에서 감면</li> </ul>
개인 소득세	개성공단에 182일 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얻은 개인	월 보수액에서 30%를 공제한 금액이 500 US\$ 이상일 경우	4%~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남북 당국 협정에 의한 소득 면제</li> <li>북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 예금이자와 보험금 또는 소득 면제</li> <li>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를 예금의 이자소득 면제</li> </ul>
재산세	매년 1월 1일 현재 공단 내 영구 건물 소유자	건물 용도별 취득시 현지가격	0.1%~1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건물소유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</li> </ul>
상속세	공단 내 재산을 상속받은 자	세금규정에서 정한 지출을 공제한 금액의 상속 재산액	6%~25%	-
거래세	생산부문의 기업	생산물 종류별 판매 수익금	1%~1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산제품을 남측 혹은 다른나라에 수출할 경우 면제</li> </ul>
영업세	서비스부문의 기업	건설, 금융 등 부문 별 서비스 수입금과 건설물인도 수입금	1%~7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부구조 부문 기업 면제 (전기, 가스, 용수, 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)</li> </ul>
도시 경영세	개인 및 기업	월노임총액 또는 월수입총액	0.5%	-
지방세 자동차 이용세	매년 1월 1일 현재 공단 내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	자동차 종류	3~60 US\$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0일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사용 기간 면제</li> </ul>

- 「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」(2003. 8. 20 발효)에 의해  
입주기업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남북 중 일방에서만 과세되며, 남측에서는 소득세 ·  
법인세 · 소득할주민세가, 북측에서는 개인소득세, 기업소득세, 소득에 대한 지방세  
등이 이에 해당됩니다.

## 외환 · 금융 · 회계

개인 및 기업은 제한 없이 외화를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으며, 자유롭게 공업지구 이외 지역으로의 입출금이 가능

- 귀금속 이외의 외화는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, 이윤 및 소득의 송금은 비과세
  - ▷ 기준화폐는 US\$이며, 각 기업은 기준화폐로 모든 회계를 처리
  - ▷ 외화범위 : 전환성외화 현금,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, 주식 등 유가증권, 양도성 예금증서, 어음, 수표 등 지불수단, 귀금속 등
- 개성공업지구 내 설립된 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

- 개성공단 내에 우리은행이 입점(2004. 12. 1)해 있습니다
- 관리위원회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국내 은행이나 외국 은행에도 개성공단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, 매 반기 계좌별로 외화수입 지출문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.

개성 현지법인은 국내 모기업과 독립된 회계단위로 처리

- 「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」에 따라 US\$로 계산
  - ▷ 현재 북측과 관리위원회가 국제관례와 방식에 준하여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규정 및 세부규정(안)을 마련 중



## 보험

「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」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은 북측 지도총국이 지정한 공업지구 보험회사에 보험가입

- 세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북측 지도총국과 관리위원회가 협의 중
  - ▶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보험사업자로 '조선국제보험사(KFIC)' 선정(2005. 1. 26)
  - ▶ 남측 보험회사와 협력을 통해 보험 지급능력 확보 등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중

- 의무보험 대상

- 화재, 폭발, 자연재해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
- 가스사고로 제3자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
-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, 부상당하게 하거나 제3자의 재산에 입힌 손해
- 종업원이 노동과정에 재해로 입은 손해

## 물자 관리

### 관세 면제

- 개성공단 내 반출입 물자와 북측의 기관·기업소·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는 관세를 면제
- ▶ 단,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 밖 북측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 부과

- 국내에서도 원산지가 북측인 반입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.

- 다만,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확인

-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우리측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
- ▶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남측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북측 세관에 제시(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·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(500유로 이하), 100유로 이하의 교역물품, 우편물은 원산지 증명서 면제)

##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표기

- 국내에 반입,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「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, 2005. 3. 10 시행)에 따라 한국산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
  - ※ 국내 투자지분과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% 이상인 경우에 국내산으로, 이외의 경우 북한산으로 판정
    - 국내산인 경우, Made in Korea, Made in Korea(Gaeseong), 한국산 등으로 표시
    - 북한산인 경우, Made in DPRK(Gaeseong), 북한산(개성) 등으로 표시
- 다른 나라로 수출될 물품인 경우, 수입국별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따라 판단

-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내수, 반제품 국내반입 후 완제품 생산, 동남아 등 무역장벽이 없는 곳으로 수출 등 업체별 대처가 필요합니다.
- 정부는 앞으로 미국 · 일본 등에 수출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, 한-싱가포르 FTA(자유무역협정)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타국가와 FTA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

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각종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※ 현재 관리위원회 사무동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, 향후 수요 증대에 따라 공공·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

### 환전·송금

우리은행 개성지점 : 입출금 및 계좌관리



### 편의점

훼미리마트 : 국내 음식료품, 주류·담배, 생필품 판매 (US\$ 사용)

▶ 08:00~20:30 영업



### 의료

그린닥터스 개성병원 : 응급 진료 (의사, 간호사 상주)

▶ 국내 의료보험 적용, 간단한 처치의 경우 무료 진료

-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출입기관과 군당국의 협조를 얻어 일산·파주지역 종합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구호체계를 마련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.

### 숙식

식당 : 아라코(주) 운영 구내식당 (아침·점심·저녁 제공, 1식 4US\$)

▶ 현대아산(주) 협력업체 인원, 현대아산(주) 복지회관 식당 (1식 4US\$) 이용

숙소 : 관리위원회 게스트하우스 (1박 30US\$)



### 소방안전

관리위원회 소방대 운영 : 소방차 1대, 소방요원 2명



## 7.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

남북당국간 각종 경협관련 합의서와 관련 규정 제정,  
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각종 지원으로 더욱 안정적인  
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

### 지원체계

####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

- 구성 : 개발업자 (현대아산(주), 한국토지공사)가 추천한 남측 인원들로 구성
  - ▷ 개성공단 관리를 위해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북측 기관  
(개성 5부, 서울 1사무소)
- 기능 : 공단관리, 각종 인허가 서비스 제공, 투자 · 경영활동 지원

- 관리위원회 임무
  -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
  - 기업의 창설 승인, 등록, 영업허가
  - 건설허가와 준공검사
  - 토지이용권, 건물, 윤전기재의 등록
  -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
  -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
  - 공업지구의 환경보호, 소방대책
  -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
  - 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업준칙 작성
  - 기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 위임 사업

- ▷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 Tel 02) 732-9722 ~ 9731, FAX 02) 732-4080  
홈페이지 : <http://www.kidmac.com>



##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

- 통일부, 산자부, 건교부 등 8개 부처 참여, 4개과로 구성
- 각종 제도 수립, 입주기업 지원 등 개성공단과 관련하여, 정부가 처리할 모든 사항을 지원단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

-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임무
  - 개성공단 사업 지원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
  - 개성공단 통행·통관, 노무관리, 공단운영 등 법적·제도적 절차 지원
  -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수립
  -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 수립

- ▷ 지원총괄과 : Tel 02) 3703-7413, FAX 02) 3703-7490
- ▷ 운영지원과 : Tel 02) 3703-7433~7434, 7437, FAX 02) 3703-7495
- ▷ 투자지원과 : Tel 02) 3703-7441~7444, FAX 02) 3703-7491
- ▷ 건설지원과 : Tel 02) 3703-7451~7454, FAX 02) 3703-7491



## 남북간 합의서

남북당국간 경제관련 4대 합의서 발효(2003. 8. 20)

- 투자보장, 이중과세방지, 상사분쟁해결 절차, 청산결제 등

개성공업지구 통행 · 통신 · 통관 · 검역에 관한 합의

- 통신 · 통관 · 검역에 관한 합의서(2002. 12. 8)

–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(2004. 1. 29, 남측인원 신변안전 포함)

원산지 확인 절차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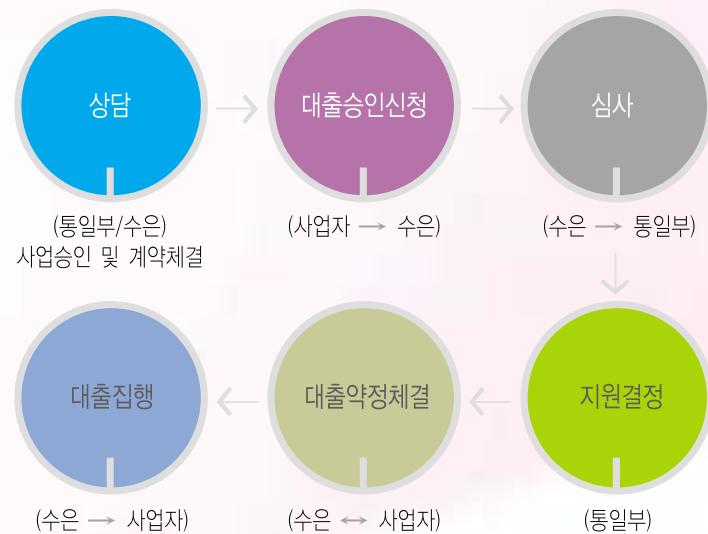
-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(2003. 7. 31)

- 북측 제정,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(2005. 6월말 현재)
  -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
  - 개성공업지구 기업 창설 · 운영규정
  -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
  -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
  -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
  - 개성공업지구 출입 · 체류 · 거주규정
  -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
  - 외환관리규정, 광고규정
  -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
  -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

##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

남북협력기금 대출

대출 절차



▶ 수은 : 수출입은행 (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)

## 대출 종류

- 투자자금대출
    - ▶ 대출금액 : 소요자금의 90% 범위 내
    - ▶ 대출기간 : 10년 이내 (거치 5년 이내)
    - ▶ 상환방법 : 연 2회 이상 정기균등 분할 상환
  -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
    - ▶ 대상요건 : 일정 신용등급 이상, 1년 이내 공장착공이 가능해야 함.
    - ▶ 대출금액 : 소요자금의 70% 범위 내
    - ▶ 대출기간 : 2년 이내
    - ▶ 상환방법 : 분할 또는 일시 상환
  - 운전자금대출
    - ▶ 대출금액 : 북한소재 법인의 1회전 운전자금
    - ▶ 대출기간 : 1년 이내 (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)
    - ▶ 상환방법 : 일시 상환

## 개성공단 소재 자산(토지이용권, 건물, 공장저당)의 담보인정

### - 담보 인정범위

	자산평가액	담보평가비율
공장부지	취득가	70%
건물	분양가 90%	60%
기계·설비	감정가 또는 조사가액 (단, 구입가 이내)	40%

- **후취담보방식 대출** : 대출금으로 건설·구입 예정인 공장·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기간 중 신용 대출로 취급
  - 소요자금의 70% 범위 내
  - 후취담보평가비율 : 토지이용권·건물 50% 이내, 기계설비 30% 이내
  - 공사기간 중 양도담보 취득, 완공 후 저당권 설정

### 대출이자율

- 이자율 결정 : 기준금리 + 신용위험가산율 - 중소기업할인율
    - 기준금리 : 국고채 유통수익률
    - 신용위험가산율 :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△ 1.0~0.5% 포인트
    - 중소기업할인율 : 0.5% 포인트
  - 대출승인 시점에서 고정금리 적용
- ▶ **기금 지원 관련 문의**
-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 Tel 02) 3703-2367, 2478(기금지원 전반)  
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 Tel 02) 3703-7443(각종 지원제도)  
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Tel 02) 3779-6635, 6636(기금대출)

손실보조제도

대북투자사업자가 투자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%까지를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

- #### ▶ 담보하는 위험 : 수용 . 송금 . 전쟁 . 약정불이행 위험 등

## 약정절차



약정기간 : 10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결정

약정금액 : 약정가액(계약·투자금액) × 90%

약정한도 : 기업당 20억원 \*단계적으로 확대 예정

약정신청시기 : 투자금의 송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

효력발생 : 손실보조수수료 납부 후

- 손실보조 수수료 = 약정금액 × 손실보조수수료율(0.7% 이하)

- ▶ 손실보조 수수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며, 중소기업은 25% 할인

지급절차 :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, 수출입은행은 소정의 사고조사 및 심사절차를 거쳐 3개월 내에 손실보조금 지급

- #### ▶ 손실보조제도 관련 문의 :

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과 Tel 02) 3703-7436(손실보조제도 전반)

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Tel 02) 3779-6625, 6639 (손실보조 약정)

## 개성공단 Network

구분	기관명	전화번호	웹주소
개성공단 지원업무 총괄	업무총괄, 방문승인 협력사업승인	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과	02-3703-7413
	통관·통행, 노무, 법률·제도, 세금	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과	02-3703-7433
	자금대출, 기술/판로지원 전략물자, 원산지	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과	02-3703-7443
	기반시설 건설	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과	02-3703-7454
북측초청장 또는 출입증, 현지 개성공단 관련 업무	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	02-732-9722	<a href="http://www.kidmac.com">http://www.kidmac.com</a>
시행(분양)	한국토지공사	031-738-7565	<a href="http://www.iklc.co.kr">http://www.iklc.co.kr</a>
시공	현대아산(주)	02-3669-3881	<a href="http://www.hdasan.com">http://www.hdasan.com</a>
통관·통행	통일부 교류협력국 교역과	02-3703-2363	<a href="http://www.unikorea.go.kr">http://www.unikorea.go.kr</a>
	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	031-954-5520 5504	<a href="http://www.unikorea.go.kr">http://www.unikorea.go.kr</a>
	관세청 서울세관	02-3438-1142	<a href="http://seoul.customs.go.kr">http://seoul.customs.go.kr</a>
기금	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	02-3703-2367	<a href="http://www.unikorea.go.kr">http://www.unikorea.go.kr</a>
	한국수출입은행	02-3779-6625	<a href="http://www.koreaexim.go.kr">http://www.koreaexim.go.kr</a>
전략물자	한국무역협회 (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)	02-6000-5393	<a href="http://stic.kita.net">http://stic.kita.net</a>
원산지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(KOTRA)	02-3460-7415	<a href="http://www.kotra.or.kr">http://www.kotra.or.kr</a>

MEMO

# MEMO

Gaeseong Industrial Complex Guide  
**개성** 공단 길라잡이 | 발행처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
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흥국생명B/D 18층  
Tel 02) 3703-7434, Fax 02) 3703-7495  
발행일 2005. 8  
기획 · 인쇄 아즈컨셉 02) 2272-4972

[www.unikorea.go.kr](http://www.unikorea.go.kr)